

의안 번호	863	<p style="text-align: center;"><b>【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b></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em;"><b>검 토 보 고</b></p>
----------	-----	--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11. 11. 11(금) ·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1. 11. 16(수)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11. 12. 1(목)

### 2. 폐지이유

- 가.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자체의 조례로 부과하여 왔으나,
-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부과기준이 개정(2009. 4. 1.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 4. 근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 5. 폐지조례안 : 따로 붙임

### 6. 참고사항

-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 다. 관련부처 승인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사항 : 2011. 9. 29 ~ 10. 19(의견 없음)

## 7. 검토의견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부과기준 개정(신설)에 따른 사유로 폐지가 되었는데
- 동법 부과기준 개정(신설)이 2009. 4. 1. 시행 시행되었는데 본 조례안의 폐지가 왜 늦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 국민건강증진법 】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삭제 <2011.6.7>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 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8.12.31]

[별표 5] <신설 2008.12.31>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 간 같은 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이상
1.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법 제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5. 법 제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6.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울산광역시중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 · 징수)** 과태료는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 한다.

**제3조(의견진술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8·8·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을 통지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한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한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4조(과태료처분통지 등)** ① 부과권자는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별표 1의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부과권자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부과권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정한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 관리)**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 및 증표)** ①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증진사업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개정 2000.4.10><개정 2007.6.11><개정 2009.8.3>

### 과태료의 부과 기준

근거 법령	부과대상	과태료(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국민건강 증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2항)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법 제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법 제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일반기준)

- 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